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647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음
- 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1,000억 원 (공사채 상환 1,000억 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 1,000억 원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 지하철은 하루 7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나,
- '25년 기준 수송원가(1,817원) 대비 평균운임(1,036원)이 57%에 불과하여 지하철 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부담('25년 4,488억 원)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1부. 끝.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김현주 (☎2133-4334)

붙임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설립일자 및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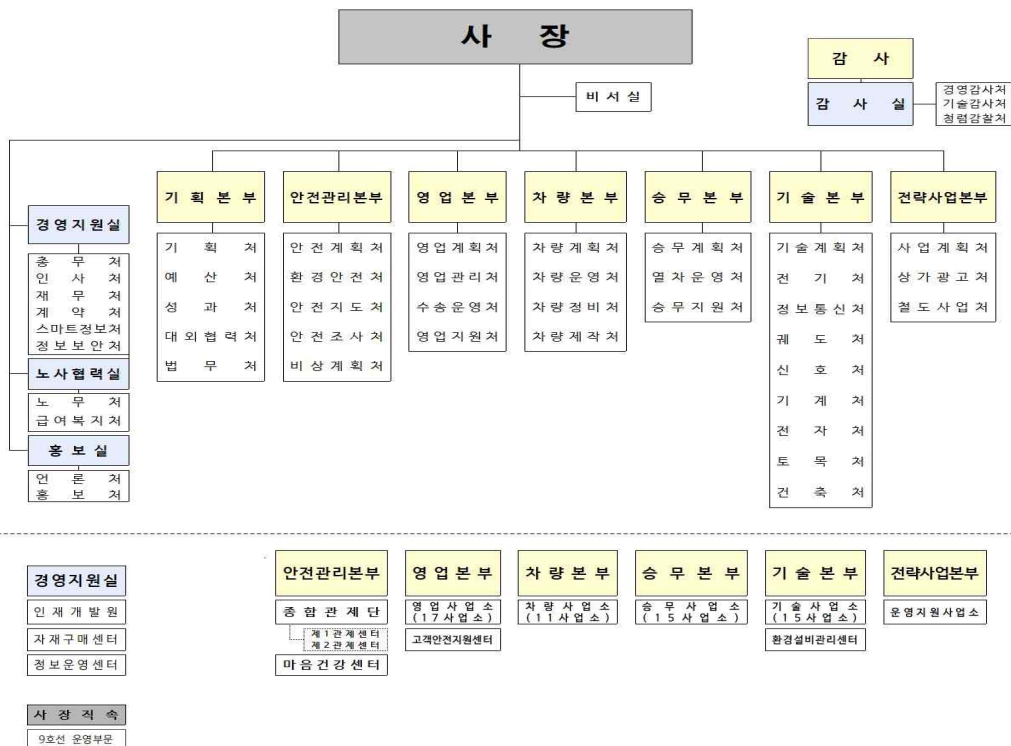
설립일자	· 2017. 5. 31.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설립근거 및 목적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49조(공사설립)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 3. 9.)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조직 및 인력 ('26. 1. 31. 기준)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 사장·감사·7본부·5실·46처 · 【현 업】 1부문·1원·1단·7센터·59사업소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원) 16,606명 / (현 원) 16,268명 ※ 9호선 운영부문(정원 297 / 현원 314명)은 별도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478명) 미포함



□ 영업현황

(’26. 2. 28. 기준)

구 분	영업연장	역 수	전동차	수송인원	운수수익
계	299.2km	276역	3,667칸	6,413천명/일	4,524백만원/일
1호선	7.8	10	160	421	249
2호선	60.2	50	794	1,906	1,496
3호선	38.2	34	490	784	532
4호선	31.1	26	520	762	511
5호선	59.8	56	640	918	627
6호선	36.4	39	312	487	322
7호선	46.9	42	577	820	578
8호선	18.8	19	174	315	209

※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기준(위수탁구간 운수수입 제외)

□ 연 혁

